

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으로 시장이 운영하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, 해당 공기업에 설치하도록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.

※ 사장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대전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③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④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공기업법/[시행 2009.10.2] [법률 제9575호, 2009.4.1, 일부개정]

제56조 (정관) ①~② 생략

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2.12.8, 1999.1.29>

[본조신설 1980.1.4]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 <개정 2006.10.4>)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3.25, 2009.4.1>

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9.1.29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4.1>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10.4>

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
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6.10.4>

⑥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

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>

[본조신설 1980.1.4]

□ 지방공기업 시행령/[시행 2009.10.2] [대통령령 제21736호, 2009.9.21, 일부개정]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**임원추천위원회** (이하 “**추천위원회**”라 한다)는 **공사에 두며**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

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 2005.3.31>

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06.6.12>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6조의4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,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.